

한국형 대체복무 어떻게… ‘기간·근무자’ 논의 불붙는다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안으로 제시
인권위·국방부·국회 등 이미 도입 고려
군복무보다 길게, 복지·소방시설 근무 등

현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
지의 판단을 했다.

지난달 28일 현재는 병역의 종
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제5조(항) 등
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현
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현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현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는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법불합치는 법조성이 현법에
위배되나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경
우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
해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대상
이 되는 현행 병역법 5조1항은 병
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
로 구분하고 있다.

그간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문제와 맞물
려 도입 필요성이 주장돼 왔다.

입영과 군인으로서의 역할만을
거부를 할 뿐 대체복무를 거부할
의사는 없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 처
벌로만 다루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대체복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사유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병역
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사회복지
또는 사회공익 등 분야에서 활동
하는 식으로 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념의 제도를 말한다.

대체복무는 디스의 국가에서 이
미 선택하고 있는 제도다. 앞서 독
일은 대체복무를 도입해 운영하다
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함
께 폐지했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대체복무제를 실
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재적으로 중국과 대치할 가능성
이 있는 대만에서도 2001년 병역거
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의 논의선상에서 국가인권원
회가 지난 2005년 이래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해오고 있다.

인권위에서는 현재 신청절차, 심
사주체 및 심사방법, 복무분야, 복
무기간 등 대체복무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
가 나오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와 국회에 제도 설계안을 제
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서도 노무형 정권 기간
인 2007년 9월 병역이행 관련 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수자의 사회복무제 평입 추진방
안’을 내놓아 대체복무제 시행을
계획했다.

이때 국방부가 추진한 대체복무
제는 당초 2009년 초 시행이 목표
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서면서 2008년 12월 국민적 합의가
미비해지는 이유로 철회됐다.

국회에도 대체복무와 관련한 병
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다면 대체복무의 심사기구의 소속
이나 기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는 이번 현재 판단으로 다른 국면
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법률 개정 시한이 내년 말까지
인 만큼 앞으로는 필요성에 대한
감론을 바보다는 한국형 대체복무
제의 형태와 방식에 관한 논의가
주로 오르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의 복
무 분야로 24시간 근접보호가 필
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
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나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
를 제시했다.

장소로는 한센·결핵·정신 병
원 등 국립 특수병원 9개소와 노인
전문요양시설 200여개 등이 고려됐
다. 방식과 기간은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 시설에 합숙하면서 현
역보다 2배 오래 복무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이번 도입 논의의 골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회적 변화와 국제적 사
례를 고려해 대체복무제의 구체적

인 방식과 기간 등을 국방부 안과
는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
한다.

국가인권회 소속 이보람 변호사
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대체복무
승인 여부를 정하고 세부절차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의 입장”이라
며 “기간은 징벌적 성격으로 쇄선
안 된다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도
입 초기엔 1.5배로 적용하되 점차
줄여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라고 제시했다.

복무 형태와 관련해서는 합숙
또는 출퇴근 여부 등이 생길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도입 초기
에는 합숙 방식으로 하되 업무 성
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점차
출퇴근하는 쪽으로 바꿔갈 필요
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현역이나 예비군 복무 중이어도
대체복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원칙적으로는 대
체복무의 사유인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은 특정한 시점의
구애를 받지 않고 발생한다고 보
는 관점의 해석이다.

대체복무가 접종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율러
의무소방·경비교도대 등 이미 시
행됐거나 되고 있는 복무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는 “복무 중에도 대체복무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 인권
에 관한 중요한 원칙이다. 예비군
병역 거부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땅히 반영돼야

할 부분이다”라며 “양심적 병역거
부자들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 사
회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
기 위해 있다. 한국에서도 이

미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뤄져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쉽
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라고 기대했다.

적정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여론 단위: %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대체복무로 적정한 기간은?



연령별	동일	1.5배	2배	3배이상
19~29세	23.2	24.0	32.3	5.4
30대	13.0	33.8	31.9	18.7
40대	10.7	43.5	28.5	15.1
50대	18.8	42.0	26.2	11.9
60세 이상	21.6	26.9	34.7	12.1

6월 29일 tbs 의뢰조사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4.4%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료: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대체복무 기간으로 일반 군복무 기간의 1.5배에
서 2배가량이 가장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
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